

축산물 유통구조 어떻게 고쳐져야 하나

축산물 유통개선에 관한 간담회 內容 요약

大韓商工會議所는 지난 1월 18일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축산물 유통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제 축산물은 국민식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생산유통 소비부문 어느 한 분야도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중에도 특히 유통분야는 축산물이 남을 때나 모자랄 때나 항상 매스컴에 문제의 원흉으로 등장하였고, 유통담당자는 생산자나 소비자로부터 공격의 표적이 되어 왔었다.

축산물 유통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이날 발표된 내용중에서 발취 게재한다.

① 畜産物의 需給 및 流通構造 改善方案

金 成 勳 (中央大 教授, 經博)

② 畜産物의 流通現況과 그 改善方案

尹 孝 稷 (建國大教授)

③ 畜産物 流通의 現況과 改善方向

李 來 秀 (農協中央會 調查部次長)

④ 畜産物의 需給과 流通改善方案

柳 允 洙 (畜産團體聯合會 會長)

다시 생각해 보는 수급의 기본원리

첫째, 축산물은 부패 변질성이 강하여 최종 소비 되기까지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물적 유통비용(저장보관 수송 품질관리 감모비용)의 발생을 수반한다.

둘째, 대부분의 신선식료품에 대한 수요는 공급의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년중 균등히 발생함으로서 계절적인 수급불균형 노출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자 각 세대의 1회 구입규모도 신선도에 대한 선호경향때문에 앞으로 일정기간 영세할 것이다.

셋째,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선식료품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험하면 사고 비싸면 안산다는 소비자의 태도(가격반응)에서 소득이 높아진 현재는 값이 어지간히 높아도 산다는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의 수요구조 변화는 축산물의 공급량다과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고 폭이큰 가격 변동 현상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축산물의 수급균형과 관련하여 다시 음미해볼점은 시차(時差)에 대한 조정 문제이다.

소비 수요는 그때의 가격조건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 수요량이 결정되는 반면 공급은 당기의(當期)가격조건 여하에 따라 일정 생산기간을 거쳐 다음기에 나타나므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났을 경우 당장에 수요면의 역조현상을 시정코저 한다면 當期의 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할 것이며 공급면의 역조현상을 시정코저 한다면 생산기간을 감안하여 현재의 미래 공급에 대한 가격을 조정 할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최근수년간 물가 당국과 농정당국이 흔히 취해온 가격기구 개입방식은 당장 발동에 떨어진 물가안정만을 위하여 무조건 가격억제=과다수입=소비조정=국내 생산저조의 방법을 취하거나 또는 책임지지

않는 그럴듯한 눈가림 시책 (예컨대 가격안정대로 적정하한선을 보장하겠다는지 수매비축하겠다고 공표)으로 과잉생산을 장려해 놓고 오히려 수급 불균형 현상을 생산공황의 경지에 이르게 하여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低價格유지라는 지상과제를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수급원리를 무시하고 단지 고식적이며 임시변통적인 과다수입으로 국민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거나 또는 과잉생산시켜 가격을 폭락 시키고 그 결과 국내 생산기반의 회손을 자초하여 장기적으로 만성적인 가격폭등을 막기위해서 계속 수입하지 않으면 아니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축산물의 수요 특성과 가격 및 수급균형의 조건이 시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인 공급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에 대한 개발투자를 확대하여 생산성의 확대를 기하여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생산(供給)에 대한 유인으로 가격수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당기간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과잉 수입품 범람의 가능성을 내포한 경제구조하에서 지속적인 생산증대는 실현할 수 없다.

셋째, 소비자의 가격안정과 생산자의 이윤증대 및 국민경제의 능률향상을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거시적으로도 가격체계를 예측할수있는 수준까지 안정시키고 좁게는 유통마진을 감축시키는 노력이 강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유통시설의 근대화 와 유통환경 법률 행정제도의 개선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단순히 유통경로나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미봉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넷째, 단기적으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격조절과 비축물량의 조정에

의하여 수요를 신축성있게 조절하더라도 한 생산기간이 경과하면 가격체계는 곧 안정을 회복할수 있어야 가격기구가 장기적으로 자급균형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되며 수입 축산물을 부득이 시판할 경우도 시판 가격을 국내산과 경쟁적으로 높게 잡아야 할 것이다. (김성훈 박사)

축산물유통의 문제점

현재의 유통정책은 소비자 가격보호를 더욱 중시한 시책과 정부가 협정가격이라는 이름하에 소매가격을 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독과점을 합리화 시키는 도매시장의 중매인 제도나, 불적 유통비용의 과다발생 수입최고기에 대한 2중가격 구조로 인한 가격혼란과, 생산지의 공동수집 출하기능이 미비하고 가공저장업은 가격불안정으로 주춤한데 도시의 축산물 도매기능은 특정상

표 1. 유사도매시장의 취급량 및 시장점유율

추정		(단위 : 마리/일)			
구 분		1975	1976	1977	
우	총 소비량	484	553	621	
	반입량	도매시장공급	467	338	199
		수입량	-	-	80
육	시장점유율	유사도매시장流入量	17	215	342
		도매시장	96.5	61.1	32.0
	수입육	-	-	12.9	
돈	반입량	유사도매시장	3.5	38.9	55.1
		총 소비량	1,218	1,383	1,497
	시장점유율	도매시장공급	650	717	1,046
유사도매시장		568	666	451	
육	장유	도매시장	53.4	51.8	69.9
		유사도매시장	46.6	48.2	30.1

주 : 년 330일 거래한다고 가정
 자료 : KDI, 서울종합도매시장사업계획, 1978
 농협중앙회 종합유통부

인의 독과점을 옹호하고 있으며 행정 지도 가격은 경직된채 공과금은 과다하다. 이로서 농촌에서의 밀매매 밀도살과 도시에서는 유사도매시장의 발로이며 (표1)저질의 축산물이 공급되는등 당초의 소비자 보호 목적(최고기55.1% 돼지고기30.1%)마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미터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에도 목척 또는 근으로 거래되어 소비자 및 생산자를 혼란 시키고 있다. 또 법에 의한 정상루트를 거칠때 유통비용은 소비단계 까지 보면 비정상적으로 거래될때 보다 약 3~4 배의 차이가 나고 있어 밀도살이 늘어나고 있다.

가축시장은 대부분 영세하며 소50두 거래에 중개인은 25명이나 되고있어 더욱 불실향되고 있으며 생산자는 불실향을 통한 계통출하를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입최고기의 경우도 이중 저가격 제도로 정육점 대량수요자만 배불리고 실제 소비자

는 구경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축산물공판장(축산진흥회에서 인수 운영계획임)은 수입육을 주로 취급 함으로서 이들의 유지경영을 위하여는 최고기 수입을 계속해야 함으로써 또하나의 최고기 수입을 위한 압력단체를 만든셈이다(서울에만 1,104곳

축산물 소비도 10년전에 최고기의 소비는 전체육류중 22%에 불과하던것이 70년에는 26.4%로 대폭증가 되었고 국내 생산 자급이 가능한 닭고기의 경우는 28%에서 21.2%로 크게 감소 되었다. (표2)

축산물 수급 및 유통개선대책

1. 현재의 소매가격은 고정하고 경락가격은 경쟁에 의하여 결정하는 목적의식 없는 모순을 과감히 시정하여 소매가격을 자유화 한다.

2. 수입 축산물은 수요부족분에 한하되 생산자 단체가 수입물량 결정에 참여한다.

표 2. 축산물소비상황표(국민 1인당 연간소비량)

년도	G.N.P	육류 비량		내역				계란			
		량 (g)	%	우육		돈육		계육			
				량	%	량	%	량	%	량(개)	%
	\$		(100)		(22.0)		(50.0)		(280.0)		
1969	208	4,843	100	1,064	100	2,422	100	1,357	100	65	100
1970	235	5,191	107.2	1,174	110.3	2,596	107.2	1,421	104.7	75	115.4
1971	266	5,250	108.4	1,217	114.4	2,491	102.8	1,542	113.6	76	116.9
1972	293	5,591	115.4	1,243	116.8	2,671	110.3	1,677	123.6	86	132.3
1973	363	5,634	116.3	1,368	128.6	2,689	110.0	1,577	116.2	76	116.9
1974	483	5,889	121.6	1,545	145.2	2,746	113.4	1,598	117.8	83	127.7
1975	531	6,370	131.5	1,990	187.0	2,800	115.6	1,580	116.4	82	126.2
1976	700	6,754	139.5	2,106	197.9	121.8	121.8	1,698	125.1	85	130.8
1977	864	8,123	167.7	2,240	210.5	3,878	160.1	2,005	147.8	97	149.2
1978	1,279	10,100	208.5	3,100	291.4	4,800	198.2	2,200	162.1	101	155.4
1979	1,624	11,210	231.5	2,959	278.1	5,870	242.4	2,381	175.5	111	170.8
1980		11,210	(100)		(26.4)		(52.4)		(21.2)		

축산단체 연합회 자료

3. 쇠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도매시장에 단보만 신탁하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도록 중매인 과점화를 배제한다.

4. 도매시장 공과금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고 정당한 육류의 서울 반입을 허용한다.

5. 공급이 부족한(쇠고기)육류의 생산지원을 한다.

6. 모든 육류의 거래단위는 십진법에 의한 미터법을 사용한다.

7. 각종가축의 사육현황은 최소 3개월 단위의 통계 파악을 정부가 하되 축산물의 장래 공급예측 업무는 객관적인 연구기관에서 한다.

중장기 대책

1. 가격안정대의 실효성을 보장할 자금확보와 저장 보관 시설의 확충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초지조성등 도로전기 관개 수리 시설등에 정부가 직접 투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3. 정부기관에 의한 물적 유통시설의 건설과 시장 운영 체제를 강화하여 유통비용의 발생소지를 감소시키고 각종시장의 공과금을 재 조정하고 지방단위의 유통행정 체제를 확립한다.

4. 민간 기업에의한 저장 가공업을 적극 육성 한다.

5. 시장정보및 관측사업을 확충하여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가 혜택을 받도록 한다.

6. 유통관련 공무원 상인 단체직원에 대한 훈련 교육을 강화한다.

7. 소비자를 단체화하여 조직적인 구매활동을 전개토록 교육 한다.

이날 직접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슈퍼마켓대표는(럭키 슈퍼체인). 우리나라가 축산물 유통마진이(쇠고기 돼지고기)가장 적으며 현

재의 8~11%밖에 되지 않는 비용을 포함한 마진율로는 유통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격자유화, 축산물의 등급화가 빨리 이루어 저야하며 현재 돼지고기 경락가격 1350원의 경우 생산비가 근당 1150원이 되는데 근당 1,000원으로 묶여 있으며 어쩔수 없이 1,200원으로 올려 받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를 시정하여 출것을 호소하였다.

농수산부를 대표하여 지설하 축산국장은 끝으로 79년은 축산업자에 어려운 한해 이었으며 이를 거울삼아 정부는 가축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관측업무와 가축통제도 3개월 마다 조사집계 하기로 하였고, 서울에 집중된 도매시장을 4 대도시에도 추진하고 비축 시설을 강화하고 육가공 공장 시설을 추진하겠으며 쇠고기 가격을 현실화해서 돼지고기 닭고기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전 기업양축가의 계열화 생산을 적극유도 하겠다고 하였다. 또 초지법을 개정하였고 98만 정의 산지를 초지화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자금을 위한 차관 교섭이 진행중임을 밝혔다

농가 부산물인 벃집 맥류의 사료화를 추진하고 암소 도살월령도 재조정하고 암소 입식자금을 증가하고 한우 잡종이용으로 육량을 증산하고 한우보호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유우를 육자원화 하는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육류의 소매가격 전면 자유화문제는 현재 물가 당국과 협의중이며 많은것을 수입억제할 계획이며 축산의 하부조직을 확장하고 축산 전업의 생산자 단체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통구조의 개선은 일조 일석에 바꾸기는 어려우며 사회적 여건이 발전하는데 따라 순리대로 발전하여야 하며 현재점으로 지적된 것부터 시정하여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文責在 記者)